

대법원 2025. 9. 24.자 2025그791 결정 [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서]

대 법 원

제 3 부

결 정

사건	2025그791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서
신청인,상대방	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(유한) 태평양 담당변호사 염호준, 전세영, 오명석, 양주형, 김민수
사건본인	, 특별항고인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일원, 김용대, 신우진, 김희중, 노재호, 이 종문, 이경은, 박병대, 진상범, 성원제, 한지연, 손한민, 곽민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(유한) 세종 담당변호사 최창영, 이원, 이숙미, 김효전, 강봉수
원심결정	대전지방법원 2025. 7. 25. 자 2025비합50014 결정

주 문

특별항고를 기각한다.

이 유

이 사건 기록과 원심결정 및 특별항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, 이 사건 특별항고는 「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」 제7조,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.

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,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

2025. 9. 24.

대법관 이 흥 구(재판장) 노 경 필(주심) 오석준 이숙연